

KERI Brief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wim@keri.org)

정 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배당을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저해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근거하면 2019년 기준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 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한 법인은 약 6만 5천 개에 달할 것이므로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생 기업에게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매우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이 주주인 가족기업으로 출발하여 개인유사법인의 비율이 50%에 달하는 것인데, 이는 청년창업 중소기업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계획하지 않은 배당을 해야 하고,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자본의 축적을 못하게 되어 현재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두 번째, 개별 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적정 유보소득 산정과 획일적인 적용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인 입장에서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도 있는데,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한다면 이는 기업의 존폐에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미실현이익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유보소득 중 이익잉여금 전체를 법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과세하는 문제, 즉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유보소득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해서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는 국가는 없다. 미국과 일본 모두 법인의 유보소득에 추가 법인세를 과세하며,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수동적 소득에만 과세하거나 자본금 등 적용대상 제한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현실과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외면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그 정책목적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므로 도입이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미 도입한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법인세율 3% 인상 등 정책과 함께 법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증세 정책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는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효율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켰으며, 결국 세수의 증가만 남았다. 결국, 중소기업이 대부분 개인유사법인(49.3%)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세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다.

1. 검토 배경

□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0%를 넘는 가족기업이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해 유보금을 쌓는 경우, 배당하지 않아도 과세하는 것임
-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의 입법 취지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함¹⁾
 - 정부는 법인세율-소득세율 간 차이에 따른 소득세 부담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고 소득률이 하락하는 등 탈세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고,
 - 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 회피를 위해 개인유사법인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 제도를 신설한다고 함
- 과세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이고, 과세방식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함*

* 배당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보다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현실을 간과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6개사(61.3%)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반대 이유로는 기업 자율성 침해(45.1%), 신규투자 위축(34.2%), 매출채권 거래로 현금이 없어 배당 곤란(12.5%) 등이 있음²⁾

- 또한 해당 세제는 적정 유보소득의 산정 가능여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 외국 유사사례의 부적절함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세부담만 증가시키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으므로 그 도입이 철회되어야 함

-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와 세수증대효과 만이 남을 것이므로 도입은 타당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도입 여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려 함

1)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0.7.22., p.101.준 것임
 2) 중소기업뉴스,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재고하라", 2020.8.14.

II. 세제의 개요 및 외국 제도

1. 2020년 세법개정안상의 제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규모 법인 과세체계 개선 방안' 정책보고서³⁾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2018년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소규모법인의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과세 관련해서는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⁴⁾ 제도를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서 도입할 예정임

○ 성실신고확인 제도⁵⁾는 소규모 법인(부동산 임대업 등 이자, 배당 등 수동적 소득이 많은 법인) 및 성실 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서 먼저 도입되었음⁶⁾

○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는 개인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개인 유사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함⁷⁾

- 법인세 세율(10~25%)이 소득세 세율(현행 6~42%)에 비해 낮은 것을 이용해 개인유사법인에 유보금을 쌓아두면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유보금에 추가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해 탈세를 막겠다는 것임

□ 2020년 세법개정안의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해서 도입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적용대상은 최대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유사법인임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임⁸⁾

○ 과세방식은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초과 유보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배당간주 금액)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함

$$\text{배당간주금액} = \text{초과 유보소득}(\text{유보소득} - \text{적정 유보소득}) \times \text{지분비율}$$

- (유보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차감항목(이월 결손금·법인세·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3)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로서 '소규모 법인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 과세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 제언으로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첫 번째, 세원관리 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수동적 소득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한 무작위 세무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두 번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정책 측면에서 법인세 낮은 세율인상, 비과세감면 제도 재설계,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과세 방안을 제시했음.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과세'는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이 높은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비해 현금성자산의 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미국의 인적지주회사세와 같이 소수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의 수동적 소득을 중심으로 과세할 것을 제안했음(김학수·우진희, 「소규모 법인 과세체계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7)

4) 이하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라고 함

5)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5~15억 원)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임. 위반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실시함

6) 외감법상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하며, 소규모법인은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을 말함(법인세법 제60조의2)

7) 법인 전환·설립 후 유보 등을 통해 '법인세율-소득세율 간 차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 등 개인사업자와 실질이 유사한 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도입한다고 함(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0.7.22., p.52)

8)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종의 경우 현금성 자산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음

- (적정 유보소득) = Max [①, ②]
: [① (유보소득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② 자본금 × 10%]
- 개인유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개인주주에 대해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중복과세 조정을 위해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게 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기 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배당간주금액을 양도소득에서 차감⁹⁾하여 조정

2. 국내외 유사 제도

-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와 유사한 제도는 국내에는 2001년까지 시행되었던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가 있고, 외국에는 미국의 '인적지주회사 과세'와 일본의 '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 과세'가 있음
-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유사 사례처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특이점임

1) 국내 유보소득 과세

-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는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억 원 초과 비상장대법인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25%(1993년 15%로 완화)의 세율로 추가과세하는 제도였으나, 2001년 세법 개정 시 폐지되었음¹⁰⁾

- 법인의 조세 구조는 법인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각각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회사나 친지들이 함께 출자한 회사와 같은 폐쇄법인¹¹⁾의 경우에는 주주가 해당 법인을 소유하며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단계의 과세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주주단계 과세의 무기한 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적정유보초과소득세임¹²⁾
- 한편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의 확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도'를 유사한 내용으로 재도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9) (과세 제외대상) 배당간주금액 - 실제 배당받은 금액

10)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1991년~2001년)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 시행)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수차례 완화되다가 2001년 말 폐지되었음(법인세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58호)

- 1993.12 개정: 세율을 15%로 인하

- 1994.12. 개정: 기업발전적립금 과세대상에서 제외, 대상법인 자기자본총액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

- 1998.12. 개정: 협회등록(상장)법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2조의2에서 제56조로 이동

11) 폐쇄회사(closely-held corporation)는 일반적으로 공개 회사와 대비되는 회사의 형태로서 쓰이고 있음. 법률규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구성원이 소수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원 상호간에 긴밀한 인적인 신뢰관계가 있으며, 회사 구성원의 사원권 양도에 법률상의 제한이 있거나 실령 그런 제한이 없더라도 이를 매매할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원권의 양도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사원의 대다수가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구성원이 회사로부터 얻는 이익도 회사의 경영결과에 따른 이익을 배당받는 형식보다는 회사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급여 등의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이익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회사임(유시창, "폐쇄적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수파 주주의 보호 방안", 「경회법학」 제44권 제2호, 2009, pp.148-149)

12) 과다유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고 상장법인과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함에 입법목적이 있었음[국회 재무위원회,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990.12.]

- 다만, 과거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다유보 억제에 목적이었다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임금증가, 상생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¹³⁾

□ 해당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기업정책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및 이중과세라는 경제계의 지속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임

- 가장 큰 이유는 1990년대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문제가 시급하였기 때문임
- 당시 재정경제부도 2001년 8월 이 제도의 폐지 이유에 대하여,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유보소득에 대한 차등 법인세율을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고, 법인이 유보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과세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고 법인세 과세체계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함¹⁴⁾

2) 미국의 인적지주회사 과세

□ 미국은 비공개법인 또는 소수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분배되지 않고 이자 등 법인의 수동적 소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34년에 인적지주회사 과세제도를 도입했음

- 이 세제의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C-Corp.) 중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지분요건), 수동적 소득이 60% 이상인(소득 요건)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하는 것임¹⁵⁾

- (지분요건) 1개 과세연도의 하반기 중 한 시점에서 5명 이하의 개인에 의해 전체 시가총액의 50%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소유된 경우¹⁶⁾¹⁷⁾

- (소득요건) 주식회사의 조정된 경상총소득의 60% 이상이 인적지주회사의 소득인 경우인데, '인적지주회사 소득(수동적 소득)'은 배당, 이자, 사용료, 연금, 임대료, 지분율 25% 이상인 주주의 회사재산 사용에 따라 수취하는 보상, 인적용역대금, 부동산 및 신탁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이익의 합계를 말함

- 이 세제의 과세표준은 인적지주회사 소득에서 일부 항목의 조정을 통해 산출된 유보소득임

- 합산항목은 과세대상소득, 공제된 기부액, 초과비용 및 상각액임
- 차감항목은 연방법인세, 공제가능 기부액, 운영업소실 등임

3) 일본의 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 과세

□ 일본은 법인세법에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특정동족회사)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10~20% 추가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1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배당, 투자, 임금증가가 목적이었음
- 14) 재정경제부, "2001년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01, p.25.
- 15) 미국 내국세입법(IRC) §542.
- 16) 5명 이하의 개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음
 - 적격연금, 이익 공유, 주식보상제도
 - 특정 조건하에서 실업에 따른 추가보상을 제공하는 신탁
 - 특정 사적 단체
 - 기부목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영구적으로 구분되는 신탁의 부분
- 17) 인적지주회사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기업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면세기업, 은행, 생명보험회사 및 보증회사, 특정 대부 및 금융회사, 소기업투자법 1958에 따른 특정 소투자기업, 법정관리회사, 외국기업 등

- 동족회사는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여 주주의 소득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 법인세법 제67조는 개인사업자와 동족회사 간의 부담의 공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동족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외에 그 이익의 내부유보에 대해 특별한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특정)동족회사란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동족관계자)이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또는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 보유하고 자본금이 1억 엔을 초과하는 회사를 말함¹⁸⁾
-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유보금액 가운데, 유보공제액을 넘는 부분의 금액이고, 유보공제액은 다음 금액(①~③) 중 가장 큰 금액임¹⁹⁾
 - ① 소득기준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 등의 금액의 40%
 - ② 정액기준액은 연 2천만 엔이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2천만 엔을 월 기준 연환산 금액으로 함
 - ③ 적립금기준액은 기말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말 이익적립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 이 세제에 대해서는 3단계의 초과누진세율(10%, 15%, 20%)로 과세가 이루어짐²⁰⁾²¹⁾
 - 연 3천만 엔 이하 10%, 연 3천만 엔~1억 엔 15%, 연 1억 엔 초과 20%

□ 유보공제액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유보 혹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이익의 적립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임

18) 일본 법인세법 제67조 제2항

19) 일본 법인세법 제67조 제2항

20) 일본 법인세법 제67조 제1항

21) 그리고 초과누진세율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해당 제도가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기업과의 사이에서 세부담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의 세율구조의 틀에 따라 필요가 있기 때문임(金子宏, 「租税法」(第十九版), 弘文堂, 2014, 454-455頁)

III. 세제의 문제점

□ 첫 번째,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배당을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저해할 수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개인유사법인'(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을 80%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 조사 대상 중소기업 300개 가운데 148개(49.3%)에 달하고, 적정 유보소득(세후 수익의 50%)을 초과하는 기업은 28개(9.3%)였음²²⁾

- 2019년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787,438개) 중 중소기업이 89.3%(703,942개)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 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한 법인은 약 6만 5천 개에 달할 것이므로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임

○ 우리나라에서 신생 기업에게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매우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이 주주인 가족기업으로 출발하여 그 비율이 50%에 달하는 것인데, 청년창업 중소기업도 다르지 않을 것임

- 이러한 특성은 무시한 채 '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이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과세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행위임

- 특히,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2배 높은 심각한 상황²³⁾에서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청년창업을 지원·육성한다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계획하지 않은 배당을 해야 하고,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자본 축적을 못하게 되어 현재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기업은 미래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본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함

- 사내유보금이 많이 적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 성장(투자, 연구개발 등)을 어렵게 하고 세 부담과 경제적 비효율만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 기회를 없애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

□ 두 번째, 개별 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적정 유보소득 산정과 획일적인 적용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음

○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적정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의 50%와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개별적인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 특히, 법인 입장에서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도 있는데,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한다면 이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음

- 중소기업의 현금 및 예금 총액은 2017년 기준 112조 9,558억 원으로 집계됐고, 2014년 75조 2,686억 원과 비교해 3년간 37조 6,872억 원(50.1%)이 증가했음²⁴⁾²⁵⁾

22) 매일경제신문, "사내유보금 많은 가족기업 '稅폭탄 공포'", 2020.8.24.

23) 2020년 8월 기준 7.7%

24) 국세청, "연도별 현금예금 총액", 2019.10.

25) 대기업, 중견기업 등을 포함한 일반법인의 현금예금 총액은 2014년 149조 5,605억 원에서 2017년 192조 8,371억 원으로 늘었지만 증가율은 28.9%로 중소기업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

- 중소기업이 이 기간 동안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등 현금성 자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를 유보하면서 현금성 자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한편, 법인이 손실이 발생하여 적정 유보소득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월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금액과 공제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과세방식일 것임

- 결국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을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시점에 차이만 있는 것이지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이 적거나 과세를 회피한다고 할 수 없음

□ 세 번째, 미실현이익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²⁶⁾

○ 유보소득 중 이익잉여금²⁷⁾ 전체를 법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과세하는 문제, 즉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익잉여금 전체가 현금이 아닌 이유는 거래를 기록하는 회계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현금성 거래가 아닌 외상 거래 등에서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추후에 과세될지 불확실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증세라고 볼 수 밖에 없음

□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외국 사례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와 비교하기에 부적절함

○ 법인의 유보소득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음

-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에서 제시하는 해외사례는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와 미국의 인적지주회사세인데, 두 세제 모두 법인에게 법인세에 추가로 10~2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지 유보금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 배당소득세(6~42%)²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님

○ 또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지분율 이외에 다른 제한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추후 국회의 동의 없이 일부 제외법인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 함

- 미국의 인적지주회사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수동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관련 소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는 자본금 1억 엔(약 11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음

○ 만약,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하는 부동산업에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까지 이루어진다면 이중과세를 넘어서 법인세,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 유보금액에 대한 배당간주세로 삼중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음²⁹⁾

26) 이한우, "법인유보금 '간주배당금 과세' 과연 타당한가"(기고), 세정일보, 2020.7.30.

27) 회계학적으로 유보소득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발생되면 증가하고 손실과 배당을 하게 되면 감소함.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및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되고, 주식발행초과금은 경영성적이 우수한 회사가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할증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액면초과금액을 말하며, 감자차익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감자를 하는 경우, 감소한 자본금이 주금의 환급액 또는 결손금의 보전액을 초과한 때, 그 초과액을 말함. 기타 자본잉여금에는 자기주식처분이익, 합병차익, 기타의 자본잉여금 등이 있음

28)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0억 원 초과 최고세율은 45%로 인상될 예정임

29) 이한우, "법인유보금 '간주배당금 과세' 과연 타당한가"(기고), 세정일보, 2020.7.30.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³⁰⁾
- 2019년 기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기 위해 신고하는 법인은 3,966개이고, 이 중 부동산업이 1,965개로 49.5%를 차지하고 있어 삼중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음

30) 양도소득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과세함(법인세법 제55조의2)

IV. 요약 및 결론

▣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첫 번째,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배당을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저해할 것임
 -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근거하면 2019년 기준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 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한 법인은 약 6만 5천 개에 달할 것이므로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신생 기업에게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매우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이 주주인 가족기업으로 출발하여 개인유사법인의 비율이 50%에 달하는 것인데, 이는 청년창업 중소기업도 다르지 않을 것임
 -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계획하지 않은 배당을 해야 하고,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자본의 축적을 못하게 되어 현재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두 번째, 개별 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적정 유보소득 산정과 획일적인 적용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음
 - 법인 입장에서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도 있는데,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한다면 이는 기업의 존폐에 직결될 것임
- 세 번째, 미실현이익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것임

- 유보소득 중 이익잉여금 전체를 법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과세하는 문제, 즉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됨

○ 마지막으로 법인의 유보소득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해서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는 국가는 없음

- 미국과 일본 모두 법인의 유보소득에 추가 법인세를 과세하며,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수동적 소득에만 과세하거나 자본금 등 적용대상 제한을 두고 있음
- 만약,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하는 부동산업에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까지 이루어진다면 이중과세를 넘어서 법인세,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 유보금액에 대한 배당간주세로 삼중의 세금을 부담할 것임

▣ 중소기업의 현실과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외면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그 정책목적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므로 도입 철회되어야 함

-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미 도입한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법인세율 3% 인상³¹⁾ 등 정책과 함께 법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증세 정책을 완성하려고 함
-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는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효율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켰으며, 결국 세수의 증가만 남았음
- 결국, 중소기업이 대부분 개인유사법인(49.3%)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세부담만 증가시킬 것임

31)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25%

[참고문헌]

- 국세청, “연도별 현금예금 총액”, 2019.10.
- 김학수·우진희, 「소규모 법인 과세체계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7.
-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문답자료”, 2020.7.22.
- 매일경제신문, “사내유보금 많은 가족기업 ‘稅폭탄 공포’”, 2020.8.24.
- 유시창, “폐쇄적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수파 주주의 보호 방안”, 『경희법학』 제44권 제2호, 2009.
- 이한우, “법인유보금 ‘간주배당금 과세’ 과연 타당한가”, 세정일보, 2020.7.30.
- 재정경제부, “2001년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01.
- 중소기업뉴스,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재고하라”, 2020.8.14.
- 金子宏, 『租稅法』(第十九版), 弘文堂, 2014.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20년 10월 06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